

제179회 영등포구의회
2013년도 제2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3. 11. 26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基 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251호로 2013년 11월 13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발의되어 2013년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2013년 1월 1일자로 「지방세기본법」에 포상금 지급 내용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포상금 지급대상 정비 (안 제2조)

- 지방세기본법 제138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과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구분 재정비
 - 지방세기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자”
 - 지방세기본법 제13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징수에 기여한 자”

- ※ “특별한 공적”의 범위 근거법령에 의해 세분화 및 명시화
- 지방세기본법 제138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조례 제1조에 따른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자” 등으로 지급 대상 구분 재정비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따라 체납자 명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고 세입증대 기여한 공무원(신설)

나. 포상금 지급기준 정비 (안 제3조)

-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부과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신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따라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여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5 (신설)
- ※ 징수 촉탁으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는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신설)
-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 산정에 자료제공 경우~ (삭제)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05조의 2 명시

다. 포상금 지급한도 신설 (안 제4조)

- 위장이혼, 은닉재산 추적등에 따른 체납액 징수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1 또는 5백만원 범위 (신설)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2013년 3월 23일 「지방세기본법」 제138조(포상금지급)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 대상과 지급기준 등을 법에 근거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에 전문적인 경험이 있는 외부 인사를 위촉하여 포상금 지급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에서는 포상금 지급대상을 「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안 제1항),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안 제2항),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안 제3항),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안제4항)등으로 규정하였으며,
- 안 제2조4항의 제1호에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를 발견하여 점용료나 사용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을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하고, 안 제2조제5항은 조례안에 규정된 “특별한 공적”을 세분화

하여 명시했으며, **안 제2조제6항**은 세입징수에 공적이 있음에도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해 규정 하였고,

- **안 제3조와 제4조**에 포상금의 지급기준과 지급한도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으로 포상금 지급 심의시 과다지급 문제 등 논란의 소지를 차단하였고.

- **안 제5조**에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3명”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포상금 지급의 공정성을 확보 하였으며,

- **안 제9조**에 부정한 방법이나,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행정착오로 환급된 경우에 포상금을 환수하도록 규정하였음.

○ 이 전부개정 조례안은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지방세 징수포상금 제도의 통일성을 도모하고,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세 징수포상금의 지급 기준을 법률로써 규정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의 수입인 지방세나 세외수입의 징수를 늘리는데 기여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인센티브 제도는 포상금 지급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전제조건임을 감안할 때,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한 시의적절한 개정이라고 사료되며, 검토결과 법체계나 자구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짐.

참 고 자 료

1 지방세기본법

[시행 2013.4.1] [법률 제11616호, 2013.1.1, 일부개정]

제68조(징수촉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자의 주소 또는 재산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을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그 주소지 또는 재산 소재지의 세무공무원에게 그 징수를 촉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를 촉탁하는 경우 촉탁받은 세무공무원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촉탁받은 사무의 비용과 송금비용 및 체납처분비를 부담하고, 징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촉탁한 세무공무원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송금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서 체납처분비를 뺀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체납처분비

③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에 지방세의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에는 징수촉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촉탁사무의 관리 및 처리비용,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제138조(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포상금은 3천 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1. 지방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4.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

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지방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납세자의 부도·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과세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등“이라 한다)
2. 자료등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3. 그 밖에 지방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등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제97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2.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3. 그 밖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⑤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 또는 신고는 성명 및 주소를 분명히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 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은 자료 제공자 또는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⑦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과 제5항에 따른 신고기간, 자료 제공 및 신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⑨ 지방자치단체장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포상금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有價物)도 지방세의 납부 등 세수증대에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지급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3.1.1]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지방세환급가산금의 계산) 법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2011.12.31, 2012.3.30>

제105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법 제13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3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탈루세액등	지급률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100분의 5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5백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
5억원 초과	1천 7백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②법 제13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3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징수금액	지급률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100분의 5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250만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
1억원 초과	400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③ 법 제1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탈루세액등의 경우에는 3천만원, 징수금액의 경우는 1천만원을 말한다.

④ 법 제13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자료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지방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과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등
2. 그 밖에 지방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

⑤ 법 제138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등록된 국내에 있는 재산을 말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1.1]

3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62조의2(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① 법 제138조제1항제4호에서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란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단순히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3.1.14]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① 행정청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관리 등에 관한 질서위반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이하 “자동차 관련 과태료“라 한다)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그 소유의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② 자동차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청이 아닌 행정청이 제1항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행정청은 영치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의 요건·방법·절차 및 영치 해제 방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